

# 정기(기동점검) 점검 결과보고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공사]

□ 점검일시 : 2021.12.06 (월)

□ 점검결과

◆ 점검자 : 정진혁

### ○ 가설통로 안전(도시철도토목부)

- 작업구3(인입선 종점부) 산지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가설통로 중 급경사 구간은 겨울철 바닥 결빙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근로자 통로를 마련하거나 아이젠을 구비하여 출입 근로자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관리 요망
  - 최상단 판넬형 옹벽구간은 추락 및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 통로를 유지관리 계단과 연계하여 마련 요망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제22조(통로의 설치)



○ 사면 안전(도시철도토목부)

- 작업구3(인입선 종점부) 판넬형 옹벽 다음 단 사면은 유로가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유수가 발생될 경우 표층파괴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상부 단에서 해당 유로에 유수가 발행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면에 우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청탐지 등으로 도포하여 관리 요망

- 작업구3(인입선 종점부) 비탈면 하부 성토부 보강토 옹벽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구간 주변 사면이 토질에 비해 경사가 급하고 토질 상태도 좋지 않으므로 작업이 없는 구간은 접근금지 조치하고 작업구간은 경사완화나 청탐지 등을 도포하여 관리 요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3.6 절토 및 성토-001(절토 작업)



○ 터널 안전(도시철도토목부)

- 인입선(하선) 굴착구간(0+800)에서 철성분이 누출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질시험을 통해 성분을 파악하고 유해물질이 포함되었을 경우 오탁수 처리나 굴착토사 반출 시 오염성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인입선(상선) 숯크리트 타설 등 굴착공사에서 터널내부 조명 관리 및 환기시설이 미흡한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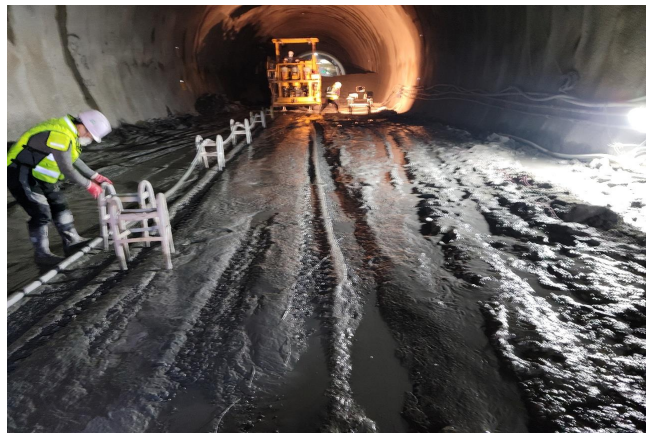
로 판단되므로 조치 요망

- 본선터널 관통 구간은 응력 집중 등으로 변형에 대해 취약하므로 안정화 전까지 철저한 계측 관리와 유사 시 보강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요망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3.5 터널-001(터널굴착(공통)), 002(터널굴착(NATM))



○ 터널 안전(도시철도토목부)

- 작업구2 2공구 방향 작업용수로 인해 바닥에 슬러지가 쌓여 가설통로 안전성 저하 및 하부지반 연화가 발생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정리 요망
- 2공구 시점방향 환기시스템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가동하고 작업 중에 계속 가동 요망
- 사갱에서 본선터널 접속부 측벽에 각종 전선 및 관 정리 요망
-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3.5 터널-001(터널굴착(공통)), 002(터널굴착(NATM))





○ 건설기계 안전(도시철도토목부)

- 현장 전체적으로 신호수에게는 호각 등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리고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도구를 지급하고 상시 몸에 지니도록 재발방지 교육 요망

- B(함)금곡제2 퇴메우기 구간에 반입된 다짐롤러는 작업자가 하차 시 시동을 끄고 시동키를 분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 소형롤러의 경우 낙석위험 구간이므로 견고한 헤드가드를 설치하고, 후방감시카메라와 후진경고음이 미설치되어 있어 협착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가용한 범위에서 후방 안전시설 설치하여 사용 요망

- 굴착기가 험지에서 작업을 할 경우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 및 관리 요망

① 궤도가 이동이나 작업 시 이탈하지 않도록 일정 장력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② 작업 시 출입문을 닫고 안전벨트를 매고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198조(헤드가드),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